

민원 인쇄

인쇄자: 이민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3-0286772
신청일	2022-03-10 15:27:52
신청인	이민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26467] 강원도 원주시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p>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 <p>어느 사업장이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종사자)가 구분되어 질텐데 위 관리감독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종사자)가 관리감독자의 법정 임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는 총괄·감독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학교 조직 내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교장과,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정기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 일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p> <p>질문 1.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하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p>

\* 질문 2. 답 없음  
(답변 불필요).



※ (질문 1의 답변이 '위임할 수 없고 관리감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질문 2 답변 불필요)

질문 2.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이 가능하다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문의

1) 산안법 적용 대상자인 현업업무종사자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근로자(종사자) 신분으로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관리감독자가 현업업무종사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해도 되는지?)

2) 산안법 적용 미대상자로서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며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는지?(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 미이수자인 일반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해도 되는지?)

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이 가능하다면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 현업업무종사자가 존재하는 각 부서에서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위임의 범위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작업복·보호구 점검 및 사용 교육·지도, 위험성평가 참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등을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두 위임하여 처리하고 총괄·감독만 해도 되는지?

나) 전부 위임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위임만 가능하다면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초기 단계로서 안전·보건 업무 추진에 있어 현장에 혼란이 많아 문의하오니 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3-0320051
접수일	2022-03-11 17:59:43
담당자(연락처)	우성윤(052-703-0647)
처리에정일	2022-03-30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3-25 14:06:01

처리결과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학교 조직 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진(학교장)자의 업무를 부하직원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따르면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적용 제외 법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장 제1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관리감독자 선임은 적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만, 학교(교육서비스업)내에서 급식소 등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 중 일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집행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로 임명(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사 사업장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있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